

## 韓藥業士의 韓藥師 轉換

법학박사 :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현행 藥事法(1963년법)이 제정된 이래 洋藥과 韓藥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여 한약 조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실질적으로 韓藥師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韓藥業士의 고유한 기능과 정당한 법적지위가 몰각되어 平等權 및 職業選擇의 自由가 유린되고 있다.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 고유의 한약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표준제도의 일환으로서 독자적인 韓藥典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한약전문인의 육성이 긴요하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한약사 제도를 창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溫故知新的 맥락에서 전통적·자생적으로 활동하여온 韓藥房 즉 韓藥業士를 제자리매김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1994년 1월 7일에 개정된 약사법은 韓藥師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한약과 한약사의 지위를 격상시켰지만 한약방과 한약업사의 지위를 그대로 방치하고 양약사를 위한 한약조제시험을 한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성을 해쳤다. 국민들이 법에 복종하는 것은 강제에 의하여서 뿐만아니라 법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만약 강제성만 있고 정당성이 없는 법은 악법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권리목록이 빠진 법도 악법이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업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한약조제권을 누락시켰다

이러한 사태에 당면하여 한약업사들은 어떠한 처신을 하여야 할 것인가? 선비정신을 표방하면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현실순응형」도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권리투쟁형」도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결단에 일임될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한약업사는 이 두가지 모델사이에서 적지아니한 갈등을 노정시켰다 그리고 현재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비판과 좌절 그리고 자탄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데에는 주저주저하고 있다 상당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은밀한 패배의식이 숨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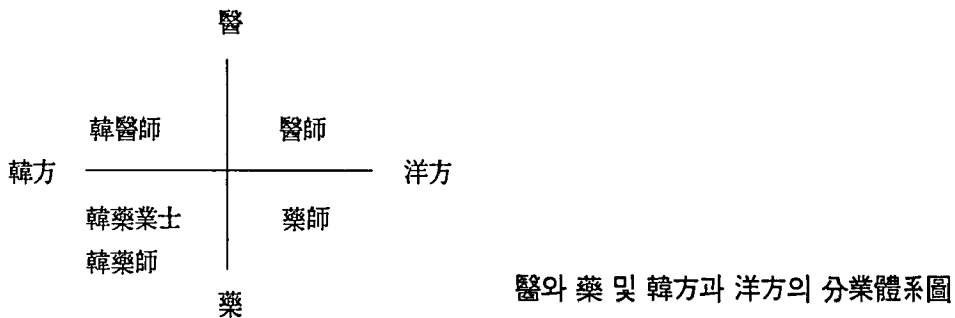
권익옹호를 위하여 입법운동에 나서려면 현대 한국 법제의 바탕이 된 근대 서구법제가 바로 이러한 鬭爭精神의 소산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 애국자는 바로 「권리의 투쟁을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권리투쟁에 주저하면서 권익보장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놀부’나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법치국가 건설의 주역이다. 예링의 말대로 권리투쟁은 「자기자신에 대한 임무」일 뿐만 아니라 「社會共同體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권리의 포기는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며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권리침해를 유발한다.

순천大 한약자원학과 출신들과 상지大 한약재료학과 출신들에 대한 한약사시험 응시기회 부여는 권리가 투쟁의 소산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개정 약사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한약자원학과와 한약재료학과 출신들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97년 3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시행령 개정인 부칙에 의하면,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같은 시행령 시험 당시 졸업자는 한약관련과목 95학점을 취득하면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약사법(제3조의 2 제2항 .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함에도 그동안 지체되어 왔다 晩時之歎의 感이 없지 않으나 결코 자혜적이 아니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이다. 한약자원학과와 한약재료학과의 학생회 임원들은 수년 동안 거의 학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교육부의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회 등을 오가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였다. 이 사례는 정면 대응으로 권리를 쟁취하는 방법이 굴욕과 동정으로 은혜를 입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길임을 보여준다.

韓藥復興과 韓藥業士 名譽回復 운동은 양약과 한약의 협력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양의 일변도의 의약분업 이론을 분업의 원리에 비추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여야 한다. 사회연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分業의 連帶性」 이론을 적용한다면, 한약과 양약은 각자의 분야에서 고유의 방법론에 의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처럼 양약 중심의 분업화는 의약서비스에 있어서의 선택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한약시장의 구조와 질서를 왜곡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해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 □ 논 단

한약업사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업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정규「韓藥師」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현행 한약업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약사법개정법 부칙에 “중전의 韓藥業士試驗에 합격한 후 10년 이상 한약조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한약업사는 이 법에 의하여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중전의 한약업사시험은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오래전에 死文化된 시험제도를 방치함은 오히려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나아가 한약업사시험 실시조항은 향후 한약업사를 계속 배출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한약업사를 한약사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궤변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약업사를 한약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소수의 엘리트주의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한다. 주된 반대요인은 한약업사들의 학력이 낮다는 것이다. 약사법시행령(제22조)은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약사와 한약사는 ‘학사’ 출신인데 어떻게 고등학교 출신이 과반수인 한약업사들에게 한약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교육법상 학력과 경력은 치환이 가능하다. 5년 이상 한약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대졸 학력으로 보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또 일시적인 경과조치로서 고졸자들에게 한의사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 땅에 博士학위 소지자가 없었을 때에는 碩士학위 소지자가 박사를 배출하였고 석사학위 소지자도 없었을 때에는 學士학위 소지자가 석사를 배출하였다. 요즘에야 대학교수 임용에 박사학위가 기본요건이지만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大學教授에 임용되어 훌륭하게 후학들을 양성한 역사는 바로 우리의 최근세사이다.

醫藥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건국후 오랫동안 醫師試驗 또는 藥劑師試驗들은 한결같이 중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다. 혹자는 반문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학사 출신들이 많고 조만간 한약사도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고졸자들에게 한약사자격을 줄 수 없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역사왜곡이다 애초에 한약업사 제도를 시행할 당초부터 ‘한약업사’를 ‘한약사’로 명명하였어야 옳았다. ‘韓藥業所’라는 웅색한 명칭 대신에 ‘한약방’을 실정법에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었다. 慣習法도 법이나 전통적으로 유일하였던 한약전문인력을 ‘한약사’로 이름짓지 아니하고 ‘韓藥種商’이니 韓藥業士’니 등의 명칭으로 격하시키고 한방을 비하시켰던 것이 저간의 입법정책이었다.

한약업사는 한약사로의 역사적·법률적 정통성을 온전하게 계승하고 있고 元祖 韓藥師 내지 「제1세대 정규 한약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현행 약사법이 한약과 한약방의 법적지위를 철저히 외면한 것도 기본적으로 「문화사대주의」의 팽배리는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방법론을 익혀 온 한약방 내지 한약업사는 열등하고 외국의 방법론을 수입한 양방만이 우수하다는 사고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前時代 상당수 한약방들의 배타와 독선에 의한 傳承秘法의 사장 또한 한약 내지 한약전문인력의 쇠퇴와 무관하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한약업사들의 법적지위 향상 및 명예회복 운동은 전시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왜곡된 역사의를 바로잡고 한국의 고유정서와 傳統文化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입법운동은 논리를 따지기에 앞서 입법자와 일반인들이 한약과 한약업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먼저 숙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래의 입법자와 일반인들은 한약과 한약업사에 관하여 정상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약과 한약업사에 대하여 생각도 행동도 없었다. 한약과 한약업사에 대한 無知로 인한 일반인들의 철저한 無關心 그것이 한약방과 한약업사의 현주소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법운동은 우선 한약과 한약업사의 실체와 기능에 대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소수 정부관료나 입법자만을 상대로 한 대화와 설득은 운동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자기들 생각보다 반대이익집단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더 유념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眞實과 非理를 널리 알리는 것」이야말로 현대법치국가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抵抗權 行使요 합법적인 권리투쟁이다.

